2014~2017 국가소비자중심
4년연속 브랜드대상 수상
http://riverview.iusell.co.kr

경산 남천리버뷰우방아이유쉘 입주자 모집공고

ujsell 우방 아이유쉘

※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,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.
- 이 주택은 2016.11.15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적용됩니다.
-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.03.31 입니다. (청약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)
-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  - 청약 순위세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: 기존 '1, 2, 3순위' 방식을 → '1, 2순위' 방식으로 간소화
  -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: 기존 '무주택세대구성원'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→ 세대주가 아닌 '무주택세대구성원'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(세대내 1명만 청약 신청 가능) 단,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.
  -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: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/ 주택규모변경 기간(2년) 및 주택규모 상향시 청약제한 기간(3개월) 폐지
  -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: 기존 '60㎡ 이하,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' 에서 → '60㎡ 이하, 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,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'로 변경
- 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.
- 이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'인터넷 청약'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,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순위 청약은 '인터넷 청약'으로 접수가 가능하고,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, 거래은행에 '2순위 청약신청금'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0조에 의해 당첨자 선정 및 동 · 호수 배정(추첨)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.[단,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사업주체가 당당하며, 동 · 호수 배정(추첨)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]
- 해당 주택건설지역(경산시)은 「주택법」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,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이 주택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개정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산시 및 경상북도, 대구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. 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 및 [경산시 고시 제2015-10호]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03.31)을 기준하여 주민등록상 경산시에 9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(2016.12.31이전부터) 경산시 90일 미만 계속 거주신청자 및 대구광역시 지역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, 경산시 90일 미만 계속 거주 신청자 및 경상북도, 대구광역시 지역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청약신청자격별 청약신청일정이 다르므로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,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고령자와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최하층 우선배정
 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5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03.31)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,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주택공급신청(특별 및 일반공급)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단, 고령자 또는 장애인과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,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(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)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(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)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「주택법」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본 주택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주택의 1순위자로 접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100%를 추첨제로 적용하여 공급합니다.
- 투기 적발자 처벌(「주택법」 제101조)
  -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「주택법」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, 형사고발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,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는 "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"에 따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.
- 이 공동주택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0조 규정에 의거 2015.6.8.일에 개정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연체,선납 구분없이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신청할려는 면적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음.

Ⅰ.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
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청 건축과 -14701호(2017.03.31)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
- 공급위치 :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255번지 외 일원
- 공급규모 : 지하2층 ~ 지상28층 총 2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[특별공급세대 총 85세대 : 일반특별공급 – 26세대,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– 26세대, 신혼부부 특별공급 – 26세대,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: 7세대]
- 대지면적 : 11,127.00㎡
- 공급대상

(단위 : ㎡, 세대)

구분	주택공급위치	주 택 형 (㎡)	공급면적 (㎡)			기타공용면적 (지하주차장포함)	계약면적	세대별 대지지분 (㎡)	공급 세대수	특별공급					일반 분양	최하층 세대수
			주거전용면적	주거공용면적	소계					일반	다자녀 가구	신혼 부부	노부모 부양	합계		
민영 주택	2017000402-01	68.4171	68.4171	23.6085	92.0256	30.8973	122.9229	36.6481	39	3	3	3	1	10	29	2
	2017000402-02	74.9654(A)	74.9654	24.2102	99.1756	33.8546	133.0302	40.1558	186	18	18	18	5	59	127	7
	2017000402-03	74.8246(B)	74.8246	24.3491	99.1737	33.7910	132.9647	40.0804	54	5	5	5	1	16	38	2

■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

(단위 : ㎡, 원)

주택형	공급 세대수	층 구분	해당 세대수	분양가격			계약금(10%)		중 도 금(60%)						잔금(30%)
				대지비	건축비	계	1차	2차	1회	2회	3회	4회	5회	6회	
							계약시	2017.05.22	2017.07.20	2017.12.20	2018.05.23	2018.11.20	2019.02.20	2019.06.20	입주지정일
68.4171	39	2~4층	6	67,432,000	146,048,000	213,480,000	10,000,000	11,348,000	21,348,000	21,348,000	21,348,000	21,348,000	21,348,000	21,348,000	64,044,000
		5층 이상	33	67,432,000	166,128,000	233,560,000	10,000,000	13,356,000	23,356,000	23,356,000	23,356,000	23,356,000	23,356,000	23,356,000	70,068,000
74.9654(A)	186	2~4층	21	73,886,000	156,174,000	230,060,000	13,000,000	10,006,000	23,006,000	23,006,000	23,006,000	23,006,000	23,006,000	23,006,000	69,018,000
		5층 이상	165	73,886,000	177,824,000	251,710,000	13,000,000	12,171,000	25,171,000	25,171,000	25,171,000	25,171,000	25,171,000	25,171,000	75,513,000
74.8246(B)	54	2~4층	6	73,747,000	156,313,000	230,060,000	13,000,000	10,006,000	23,006,000	23,006,000	23,006,000	23,006,000	23,006,000	23,006,000	69,018,000
		5층 이상	48	73,747,000	177,963,000	251,710,000	13,000,000	12,171,000	25,171,000	25,171,000	25,171,000	25,171,000	25,171,000	25,171,000	75,513,000

※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의거 세대의 층수로 인정되어 층수 구분이 변경될 수 있음

■ 주택형 표기 안내

공고상 (청약시) 주택형	68.4171	74.9654(A)	74.8246(B)
약식표기	68	74A	74B

※ 주택형은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, 건축주택 및 카탈로그, 홍보물 등은 약식으로 표기하여 있으니,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공통유의사항
- 아래에서도 명확하게 밝혀 내세워 각 항목별 중복적용 공개하고 기입자 명의임을 보호 등을 위해 사후감은 삼사하지 않음.
- 당기 공급(공급)대상 : 주택형별 숫자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, 동일별 등은 약식으로 표기하여 있으니,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입지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오차발생이 있을 수 있음.
- 입지 세대별 계약면적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며, 지하주차장 면적은 주거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음.
- 입지 세대별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, 주거공용면적, 기타공용면적(지하주차장 면적 포함)을 모두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, 지하주차장 면적은 주거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음.
- 입지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오차발생이 있을 수 있음.
- 신청자가 및 입주 등의 경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형별 공급면적 및 세대별 대지지분 산정.
- 주거공용면적은 계단, 엘리베이터, 공동주택 관리사무소, 노인정, 어린이집, 주민공동시설, 지하층 중 주거공용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등 공동주택의 주거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, 지하주차장 면적은 주거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음.
-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 외 지하층 중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면적 및 지상층 중 발코니 등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말함.
- 주거전용면적은 실제 주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며, 발코니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.
- 주거공용면적은 각 세대별로 배분된 면적이며,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외 단지 전체 주거공용면적은 별도로 있음.
- 세대별 대지지분은 각 세대별로 배분된 면적이며, 세대별 대지지분 외 단지 전체 대지지분은 별도로 있음.
- 세대별 주거전용면적, 주거공용면적, 기타공용면적, 계약면적, 대지지분 등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였으므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.
- 세대별 주거전용면적, 주거공용면적, 기타공용면적, 계약면적, 대지지분 등은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.
- 세대별 주거전용면적, 주거공용면적, 기타공용면적, 계약면적, 대지지분 등은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증감될 수 있음.
- 세대별 주거전용면적, 주거공용면적, 기타공용면적, 계약면적, 대지지분 등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였으므로 오차가 발생할